

영등포구의회  
제 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6. 10.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170호로 2016년 10월 14일 유승용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에너지관련 시책 수립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마. 기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 바.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아. 에너지 절약 등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4조~안 제15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지역 에너지계획의 수립),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6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 10. 7. ~ 10. 11.)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각종 에너지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4장으로 나누어 본칙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1)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함.
  
  - 2)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에너지 합리화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평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3)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정책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에너지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기술제공과 신·재생에너지 설치관련 보조금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교육·홍보·포상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이용 촉진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체계 구축 및 합리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8.]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

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4.5.]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  
 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  
 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지를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  
 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8.]

##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